

양심적 병역 거부 관련 자료 모음 1

1. 징병제와 군복무의 실태 및 대안모색을 위한 워크숍 자료집 2001/03/17

- 1) 대만 대체역(사회역) 제도에 관한 경험 소개
- 2) 콜롬비아의 양심적 징집거부 운동과정에 대한 고찰
- 3) 대한민국 징병제의 또 하나의 폭력, 군사제도와 징병제에 짓밟힌 양심(홍창욱, 평화인권연대)
- 4) 인권으로서의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덧붙이는 얘기들(이대훈-영국브래드포드대학, 평화학)

2. 유엔자료/영문

-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결의안 27호/1984.
-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한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안 83호/1995.3.8
-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한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안 77호/1998.4.22
-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한 유엔 인권위원회 짧은 결의안 34호/2000.4.20

3.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앰네스티 정책지침

4. 양심적 병역 거부 관련 기사 모음

- 한겨레 21/한겨레 신문/디지털 말..

징병제와 군복무의 실태 및 대안모색을 위한 워크숍

- 양심적 병역 거부 -

- 때 : 2001년 3월 17일(토) 오후 2:00 - 18일(일) 오후 5:00
- 곳 : 파주 흥원 연수원
- 준비하는 이들 : 이김현숙, 정경란, 전은주(평화를만드는여성회), 김창수(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조용환(변호사), 이혜숙(전국군폭력희생자유가족협회), 카린 리(미국친우봉사회), 윤정숙(한국여성민우회), 최정민(평화인권연대), 이대훈(영국브래드포드대학평화학)

■ 워크숍 전체 일정

<17일(토)>

Session I

- 기초발제 (pm 2:30~2:50)
<현행 징병제와 군복무, 무엇이 문제인가?> : 김창수(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 패널토의(pm 2:50~3:50) : 대만, 콜롬비아 / 순차통역(각 15분씩)
: Chien Hsi-Chien (Peace Time Foundation in Taiwan총무)
: Ricardo Pinzon (Colombia) 라틴 아메리카의 양심적 징집거부운동
- 질의응답 및 토론 (pm 4:00~5:00)
- 영역별 발제 및 질의응답 (pm 5:20~6:30)
 - ① 징병제 실태와 병무비리 : 김중대
 - ② 군대폭력과 군의문사 : 이해숙(전국군폭력희생자유가족협회)

Session II

- 영역별 발제 및 질의응답 (pm 7:30~9:00)
 - ③ 병역미필 피해자-여성과 장애우, 군대내 성폭력 : 정감자(한국여성민우회)
 - ④ 양심적 병역거부, 징집제에 의한 피해실태 : 최정민(평화인권연대)
- 작은 잔치 (pm 9:00~11:00)

<18일(일)>

Session III

- 국내의 경험나누기 및 UN관련법 (am 9:00~12:00)
<국내의 양심적 징집거부 사례 및 한국에서 가능한 대안탐색>
 - ① 국내 : 김삼석 / 국외 : Chien Hsi-Chien, Ricardo Pinzon
 - ② UN관련법 : 이대훈(브레드포드대학 평화학)

Session IV

- 대안 및 전략 토론 (pm 1:30~4:00)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 : 사회 이김현숙(평화를만드는여성회)

대만 代替役(社會役) 제도에 관한 경험 소개

簡錫士皆

1999년 대만 代替役(社會役) 제도에 관한 경험 소개

變, 非暴力

- ① 보수 있는 것도 바르시 안지
- ② 폭력도 신중히 안지

1. 기본이념 :

(社會役) 즉 대체복무제도, 또는 代替役이라 함.)의 도입은 평화운동의 일환으로 사회가치 개선 사업이기도 하다. 유럽국가에서는 오래전부터 社會役 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국가에 있어 이 제도의 장점은 사회복지 관련 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사회가치의 개선을 추진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을 물질 추구에서 사회 공익 증진에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현재 복지사회로 진입하는 과도기에 있는 대만은 의료, 노약자, 산림보호, 소외지역 교육, 재해 방지, 지역 건설 등에 있어 막대한 인력이 필요하다. 젊은이들의 인력자원을 활용하여 사회 개선 사업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社會役 도입의 원동력이다. 社會役의 도입은 兵役 행정 혁신을 추진하고 군사 대립을 해소할 수 있으며 전쟁이 애국심의 유일한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 줄 것이다. 평화롭고 조화를 이루며 서로 돕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희망의 병역' 즉 社會役을 도입하는데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2. 과정

1) 저항: 주로 국방부에서 많은 저항이 있었다. 그 이유는 이직 적대세력이 강기때라 (당시 대만도 병역도 60%)

(1) 병력부족으로 직업군인 모집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 그 후 입법원의 압력 하에 국방부에서는 '精實方案'을 추진하였고 감원 및 조직 개편으로 인해 많은 잉여병력이 나타나 社會役제도를 반대하는 우려를 바로 해소할 수 있었다.

(2) 국군의 자질에 영향을 끼쳐 양질의 인력들이 社會役에 몰려 군인 전체의 자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 그래서 국방부와 협상해서 추천방식을 통해 國防役 또는 社會役에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3) 사회에서 병역을 회피하는 수단, 또는 사회 상류층들의 병역기피 수단으로 인식한다.

(4) 저임금 노동력을 공급하므로 취업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

2) 優良文教基金을 설립하여 社會役제도를 추진하는 촉매 역할을 한다.

(1) 민간단체에서 '社會役民間推進聯盟'을 설립했다. 이 단체에는 장애자연맹, 중화민국 지체자 가장총회, 에덴사회복지기금, 대만환경보호연맹, 노동자 및 여성운동 단체 등이 포함돼 있다.

(2) 입법원에서 56명의 입법위원들이 '초당파社會役추진팀'을 구성했다. 병역 60 → 45 → 40%

(3) '精實方案'이 실시된 후 병력인력이 남아돌아 많은 병역 적령자들이 병역대기하게 됐다. 대부분 6개월에서 1년을 기다려야 한다. 이때가 社會役을 추진하는 좋은 시기가 됐고 이와 함께 병역기간을 단축하는 운동도 전개할 수 있었다. 기존 2년 戰鬪役을 1년 10개월로 단축하고 상대적으로 社會役 군복무기간을 늘렸다. (정도이른이 추방이 안되는)

(4) 1997년 9월 행정원, 내정부 役政司와 국내외 학자들이 유럽에 社會役제도를 견학했다. 그 후 정부측에서 실시방안을 수립한 후 '행정원병역대체역 추진위원회'를 설립했다.

"대체역" "보병" 생각부터 시작

3) 헌법에서는 '국민은 병역의무가 있다'고 규정할 뿐 社會役에 대한 언급은 없어 社會役의 추진은 위헌 소지가 있었다. 따라서 헌법 수정과 관련된 국민대회 대표들을 설득하며 헌법 수정 시 '국민을 병역 또는 社會役 의무가 있다'는 조항을 넣도록 여러 차례 요구했다. 그러나 '국민대회 폐지'라는 정쟁이 이 조항의 토론 자체를 무색하게 하여 헌법 수정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전략을 바꿔 병역법에 한 조항을 추가해 兵役代替役이라는 명칭을 넣도록 했다.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代替役 실시 조항을 제정했다. 수정된 병역법은 일반 국방역 기간을 2년에서 1년 10개월로 단축하고 代替役기간을 2년 2개월로 정했다. 종교양심범 지원자들은 2년 9개월로 하여 병역의 공평성을 유지했다.

4) 법률 수정 후 2000년 7월에 '代替役'은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기간종류구분 : 징병 2년 2개월 징리?

공정성 문제
||
추진제약

3. 대만 社會役(代替役)의 내용

(1) 代替役은 군인 신분이 아니므로 군사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不服從, 탈병, 하극상 등 행위가 있을 경우 형사법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

(2) 代替役 종류는

- A: 사회치안류: 경찰역, 소방역
- B: 사회봉사류: 社會役, 환경보호역, 의료역, 교육봉사역
- C: 기타 행정원에서 지시한 종류.

(3) 사회상류층 클럽이 되지 않도록 代替役의 군복무기간은 국방역 보다 4개월 길다.

(4) 代替役의 대우는 현역 군인에 준 한다.

(5) 代替役의 군복무자는 일반 병역의 상해위자료, 의료보험, 숙식, 복장 등 모든 규정에 준한다.

4. 개선해야 할 문제 :

(1) 개인적인 문제:

- * 군복무자는 전공에 따라 代替役을 신청 할 수 있어야 하며 우선권이 부여돼야 한다. 추첨으로 해서는 안 된다
- * 代替役 군복무자는 신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군인신분과 자주 혼동된다.
- * 考試權, 차표, 비행기표 등의 할인율이 일반 군인보다 낮다.
- * 주 5일 근무제를 적용해야 하는가?
- * 전과자는 경찰역 또는 교육역에 참여할 수 있는지? 전과자 조사 방법등.
- * 代替役과 봉사받는 자와의 다른 성별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
- * 군복무기간에 거주 수준의 차이.

(2) 사용자측:

- * 사용자측의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代替役을 값싼 노동자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
- * 사용자측에서 실단숙식을 제공할 수 없어 代替役 활용을 감히 신청하지 못 한다.
- * 사용자측에서 관리할 능력이 없어 內政部 役政司에서는 지역감독관을 설치하여 우수한 代替役을 지역감독 간부로 선정해야 한다.

(3) 사회:

- * 국방부에서 여전히 전공에 따라 징병하는 것을 반대한다.
- * 사회 전반적으로 代替役에 대한 인식이 달라 社會役도 여전히 지켜야할 기율이 있다는 것을 소홀히 한다.

軍인권위원회

<취지>

우리나라의 병역제도는 징병제로서 해당 연령의 남성은 모두 군인이 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는 대만을 강탈하고자 부심하는 강대국 중공의 위협에 처해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젊은 건아들은 대만을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 군복무를 하고 있다. 유사시를 대비, 군대를 양성하는 목적은 국토를 수호하고 국민들이 안정과 평화 속에 열심히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군대는 반드시 합리적이고 화목한 대가족이 되어야 하며 그래야만 단결하여 외부의 위협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군인들도 반드시 합리적인 인권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만약 당신의 아들이 군대에서 피해를 당한다면 우리는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당신을 위해 권리와 행복을 되찾아 줄 것이다.

군대 내의 인권과 안전, 복지를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군인권위원회를 설립한 취지이다.

상처의 낙인

1995년 6월 9일, 나는 군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가오슝(高雄)의 쥐잉(左營)항에서 군복무중인 아들 황궈장(黃國長)이 평상복을 입고 917호 남양(南陽)함에서 물에 뛰어들어 탈영을 했다며 빨리 아들을 내놓지 않을 경우 본인이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탈영과정에 대한 군측의 설명은 앞뒤가 맞지 않아, 믿기 어려웠으며 나는 불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6월 15일 중국어선이 팽후(澎湖)해의 무도우(目斗)섬 부근 해상의 해역 교차점에서 뜻밖에도 황궈장의 시신을 건져 올렸습니다.

6월 17일 국제적십자협회는 여러 곳을 거쳐 마침내 가족들에게 황궈장의 죽음을 알렸고 내가 푸젠(福建)성 췌엔조우(泉州)의 스스(石獅)항으로 가 시신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 주었습니다.

황궈장은 사망 당시 군복을 입고 있었으며 은몸은 상처 투성이었습니다. 머리부분에 약 22센티미터의 철 침이 박혀 있어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으리만큼 참혹했으며 의도적으로 살해되었음이 분명했습니다. 이 철 못은 비통한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였고 사실을 은폐하여 국민과 세상을 우롱한 군측의 거짓을 드러냈습니다.

軍인권위원회의 탄생

군대의 위협통치에 의한 은폐 작업으로 수 십년 동안 황궈장 사건과 유사한 비극들이 얼마나 많이 재연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현재 대만에는 부당한 훈육으로 인해 매일 평균 1.29명의 군인이 사망하고 있으며 군측이 은폐하고 있는 중상 또는 불구사례는 이 숫자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인성을 파괴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군대의 어두운 현실을 밝혀내고 군인들에게 실질적인 생활의 안전과 정신적 도움을 주기 위해 나는 아들을 잃은 고통을 승화시켜 군인권위원회를 창립했습니다. 인력과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

를 악물고 고통을 참아내며 갈수록 힘들고 무거워지는 위원회 업무를 버려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비슷한 어려움을 당한 가족들이 서로 의지하고 돌볼 수 있도록 연결해 주었으며 다음 단계로 군 인권카드를 발급하고 군인구조 핫라인을 개설하여 군인들이 위협이나 고통을 당할 경우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는 최후 방어선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부의 일부 신고 기관들은 그저 모양만 갖추었을 뿐 유명무실합니다. 어려움을 당한 가족들이 관련 기관에 신고를 해도 언제나 감감 무소식이고 상대도 하지 않습니다. 굴욕을 당하고 도움을 청할 곳이 없는 비참한 상황에서 그저 어려움을 당한 가족들을 연결해 주고 몇 차례 의 도움을 드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약하고 상처 입은 가족의 몸으로 총과 탄약으로 무장한 군대 고위급 관리의 경호대와 감시 기관의 보이지 않은 심리적 위협에 대항했으나 힘없고 고통 당한 두 손으로 어떻게 해야 특권계층의 군포와 전차를 뒤흔들 수 있겠습니까?

군인권위원회는 당신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군인들이 부당한 훈육과 특별 명령에 의해 피해를 당할 경우 그 육신과 정신에 남는 고통은 본인과 가족에게 있어 일생동안 떨쳐 버릴 수 없는 악몽입니다. 원래 평범하고 행복했던 가정들이 많은 사례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지키라고 아들을 보냈다가 아예 아들을 영영 떠나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더 많은 피해자들이 평생 불구의 몸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 가족에게 무거운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가족들은 정신적인 충격으로 자살을 하며 마음속에 상처를 안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이로 인해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수많은 비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군대의 인권문제는 국가와 사회 전체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어느날 갑자기, 이와 같이 아무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고통스런 상황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일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일이 발생하기를 바라지 않으며 이 또한 군인권위원회의 설립 목적입니다.

본 위원회는 군인들의 사고 사건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으며 피와 땀으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가족들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적절한 보장과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힘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불행을 막을 수 있다면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희망이자 위로가 됩니다. 만약 군대에서 정신적인 압박과 위협을 느낀다면 빨리 도움을 요청하고 이를 대수롭게 여기지 말 것을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국민들이 망각할수록 정부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사회가 냉담할수록 군대는 더욱 무지막지해집니다. 비록 우리의 자금과 인력이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할 것입니다. 최대의 효과를 발휘, 해가 갈수록 더 많은 국민들의 주의를 환기시켜 그들이 대만 젊은 군인들의 미래를 진지하게 바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체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만들어진 사회의 힘을 바탕으로 할 때 비로소 군대에 있는 우리 아들은 생명을 보장 받고 인격을 존중 받을 수 있습니다. ▣

콜롬비아의 양심적 징집 거부 운동과정에 대한 고찰

Ricard Pinzon (CO activist in Colombia)

콜롬비아의 양심적 징집 거부 운동의 역사는 90년대 초반을 시작으로 기독교와 카톨릭 등 종교계와 연계된 통치 조직들의 반대 세력에도 불구하고 점차적으로 그 틀을 잡아가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콜롬비아의 경우 강제적인 군복무 참여를 거부하는 비폭력 운동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화하는 문제가 대두되는 바 이를 위한 전반적인 합의가 궁극적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비폭력적인 관점에서 볼 때 폭력을 행사하는 어떠한 무장행동도 법의 테두리에서 용납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관점을 토대로 양심적 징집 거부 운동이 그 정당성을 인정 받게 된다.

세계 각국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콜롬비아의 헌법 18조에 명시된 누구도 자신의 양심에 반하여 행동하기를 강요당하지 않는다. 라는 양심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토대로 양심적 징집 거부 등은 그 의의를 가지게 된다.

개개인의 양심과 종교적, 윤리적, 인도주의적, 정치적, 철학적 뿐만 아니라 환경문제 고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이에 기초한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전쟁과 갖가지 분쟁에 직접적이든 아니면 간접적이라도 개입하는 것과 강제적으로 군복무를 수행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총괄적으로 양심적 징집 거부 운동이라 칭한다.

이에 대한 고찰내용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약 500년 전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자국의 영토 확장을 위한 정복사업과정에서 토착민들을 다스리는 방안으로 도입한 카톨릭적인 전통을 고수하고 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이 전통을 이용하여 카톨릭을 신봉함과 동시에 스페인 국왕에 대한 충성을 유도할 수 있었다.

그러한 정복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인종간의 결합이 이루어지게 되며, 새로운 종족이 출현하게 되고 그 수가 점차 증가하게 되며 동시에 토착민들의 토지와 재산을 빼앗는 정복자들의 만행에 대한 분노가 커지게 됨으로써 독립전쟁이 시작되게 되었다.

군대와 민간인을 동원한 정복 운동과정은 이를 위해 국민을 통제하고 또한 이들을 이러한 과정에 강제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한 메커니즘이 요구되었으므로 점차적으로 헌법에 이러한 사항들을 첨부시켜 이를 합법화하기에 이른다.

20세기에 있어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수많은 군사 쿠데타 등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이유로 이들의 군사 기관들은 통치와 통제의 핵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계속되는 인권유린, 권위주의, 군이 국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무시하는 등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되자 군사독재를 타도하기 위한 투쟁 운동이 대두되게 되었다. 따라서 80년대부터 이미 군사 정부들을 타도하는 운동이 성과를 거두게 됨으로써 민주주의로의 이양 의 새로운 시대가 태동하게 되며 또한 국민의 참정권,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각각의 인종과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등의 인권에 관한 조항들이 속속 헌법에 새롭게 명시되는 등 헌법개정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콜롬비아 사례.

→ 주요 시사록지 (1970-80년대 이후) + 비고

다양한 2차~2차5차 기법

① 유감스럽지만 기법 (사건으로 징집성격 - 무의...) (콜롬비아 22대 50% 징집률 0.29%)

콜롬비아는 유감스럽지만 50년 이상 마약과 각종 범죄와 연계된 게릴라를 비롯한 여러 무장 조직들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폭력이 난무하는 국가로 낙인 되고 있다.

만연된 콜롬비아 정부의 부패와 이러한 인권 유린 사태들로 인해 다양한 문화적 유산과 풍부하고 우수한 농수산, 광업자원을 지니고 있는 콜롬비아의 진정한 참모습 등이 커다란 타격을 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전쟁을 방불케 하는 게릴라를 비롯한 이러한 무장 조직들과 이를 진압한다는 구실하의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은 콜롬비아 안보 기관들의 활동들은 현재 인권과 평화문제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법제화되었음을 이유로 그 정당성을 주장하는 다양한 진압기관들에 강제로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양심적 징집 거부운동이 다양한 방법과 양식으로 표출되게 되었다.

1993년 제정된 헌법 48조에 모든 콜롬비아의 국민은 공식적으로 그 필요성이 대두되는 경우 의무적으로 군대에 참가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듯이 콜롬비아에서 군복무는 의무적이다. 따라서 18세의 대부분의 콜롬비아 남자들은 고등학교 교육을 마친 후 군복무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추첨제로 되어있는 이 군 체제 하에서 고등학교 교육이상 받은 사람은 1년의 복무기간을 가지게 되며 고등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은 18개월에서 24개월사이 복무기간을 거쳐야 한다.

이전에는 15세, 17세 등의 청소년들이 군복무를 하는 일들이 빈번히 있어 왔으나 1년 전부터는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을 군에 징집하는 관행이 더 이상 이루어 지지 않는다.

신기하게도 군에서 복무하게 되는 청소년들의 상당수가 혜택을 상대적으로 받지 못하는 농촌 출신들, 흑인들, 원주민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추첨을 통해 군복무가 면제된 청소년들은 그들의 경제수준에 따라 미화 150달러에서 10,000달러 혹은 이상을 세금 형태로 지불해야 한다. 문제는 대부분의 이들 청소년들이 이 금액을 지불할 경제적 능력이 되지 못하므로 벌금이 부과되거나 간혹 군대에 불러 가기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다른 무장 조직들과 마찬가지로 게릴라들은 강제로 또한 무차별적으로 그들 조직에 18세도 안 되는 남녀 어린 이들과 농촌 젊은이들을 동원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콜롬비아의 양심적 징집 거부 운동자들은 생활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러한 폭력 무장조직에 참여를 거부하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임하고 있다.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에 위치한 콜롬비아의 양심적 징집 거부 단체는 이 운동의 선구자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오고 있다. 이 운동의 중추적인 작업들은 다음과 같은 부문에서 이루어 지고 있다.

- 교육부문
- 비폭력을 토대로 한 직접적인 행동 부문
- 정치참여 부문
- 국내 및 국외 관련기관 들과의 연계 활동 부문

이러한 운동은 우선적으로 청소년 계몽운동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 활동들

국민투표에 의해 당선되며 입법권을 가지는 국회의원 들을 대상으로 하는 로비는 강제적인 군 징집에 대신하여 양심적 징집 거부 운동을 뿌리내리는 데 있어 커다란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이를 위해

1. 양심적 징집 거부 운동을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2. 매스컴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여론을 형성하고

콜롬비아 ^내 라우시적 운동
 ① 무기를 들고 싸우게 하자
 ② " " 남부

3. 이 운동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입지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권, 비폭력, 폭력적인 분쟁 대처방안, 교육 환경에 있어서 분쟁에 대한 숙지, 양심적 징집 거부 운동 등에 관한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자료들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를 위한 국내외를 막론한 공식적인 이벤트들을 조직하는 것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보스니아, 터키, 크로아시아, 핀란드, 남아프리카 공화국등을 포함한 50개국 이상이 참여한 1993년 ICOM의 개최 또한 이 운동에 큰 힘이 되었다.

이외에 1993년부터 ROLC 즉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국가의 양심적 징집 거부 운동단체의 창립국가들과의 활발한 연계 활동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콜롬비아의 다른 국내 도시들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양심적 징집 거부 운동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이를 위한 지원 작업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다.

콜롬비아의 군 폭력과 인권 유린

콜롬비아 내전 및 폭력은 종종 마약 밀매 때문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지만, 문제는 좀더 본질적인 데 있다. 희생자들 가운데 막대한 수가 비전투(noncombatant) 민간인들이다. 1987년 이래, 3만5천 명 이상의 비전투 민간인들이 살해되거나 실종되었다. 콜롬비아는 풍요로운 자연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불평등한 부의 분배로 인해 몇몇 인구 지역들은 극심한 곤핍에 시달리고 있다.

콜롬비아는 석유 수출국이자 주도적인 커피 생산국으로서 자원이 풍부하며 인구 밀도도 안정적이다. 그러나 동시에 콜롬비아는 난무하는 폭력으로 골치를 썩고 있고, 미국으로 밀수입되는 코카인 생산의 천국이 되고 있으며, 헤로인의 주요 출처국이기도 하다. 콜롬비아에 폭력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1970년 중반부터 계속되어온 대대적인 마약 밀매를 종종 지적하긴 하지만, 정치적 동기에 의한 살해는 문제의 마약 거래보다 시기적으로 훨씬 앞서서 자행되어 왔다. 폭력이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피투기는 경쟁의 산물은 더더욱 아니다. 오히려 폭력은 반체제 인사들의 존재를 용납하지 않는 콜롬비아의 정치 문화와 급박한(desperate) 여건에서 양산된 것이다.

콜롬비아는 수십 년 간 자유당(Liberal)과 보수(Conservative)당 양당이 번갈아가며 정권을 장악해 왔다. 양당간의 정전은 종종 내전과 지역 분쟁으로 비화되었다. 지난 La Violencia 분쟁 기간(1948-1953년) 중에 무려 1백4만5천 여 명이 살해되었으며, 전후로도 몇십 년 간 두 정당은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여타의 진보적 견해들을 배제시키는 타협안을 도모하는 일에만 협력했을 뿐이다. 그러나 이 두 정당이 헤게모니의 단물을 빠는 동안 국가부 배분의 불평등성은 악화일로로 걷고 있었다. 3분의 1에 해당하는 하층 인구가 국가 전체 수입의 10% 에도 못 미치는 수혜만을 누리고 있는 반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상층 인구는 70%에 육박하는 국가의 부를 취해 가고 있다. 20%라는 살인적 실업률을 기록하던 지난 1999년의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콜롬비아에 주어진 매력적인 옵션들이란 마약 거래 아니면 정치 갈등이었다. 맹렬한 반군 소탕전(La Violencia에서 연원)을 선포한 콜롬비아 정부는 두 주요 반군 세력인 콜롬비아 무장혁명군(FARC)과 민족해방군(ELN)을 토벌하기 위해 정부군과 준군사 조직(paramilitary allies)¹⁾를 대대적으로 투입하였다. 군소 반군 세력들이 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군들을 무장해제한 정당의 형태로 전환시키려던 희망은, 1985년 무장혁명군과 기타 좌파 정치 그룹의 지원하에 창설된 애국 연합(Patriotic Union)당의 멤버 2천5백 명이 살해됨으로써 무산되었다.

1999년에는 전투와 관련된 기록상의 사망자만 1천 명에 이르렀고, 최근에 무장혁명군의 공격은 더욱 빈번해졌다.

1) 준군사 세력은 대략 7천여 명(남성)에 이른다. 그들은 콜롬비아 정부군과 대지주, 다국적 기업과 마약 카르텔로부터 활동 자금 및 군사 훈련, 각종 군수 물자를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끔찍한 참상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민간인들이다. 콜롬비아 군대는 농민들을 게릴라 세력과 격리시키고 게릴라 세력의 활동 배후를 파괴할 목적으로 농민들을 위협하고 그들을 도시민민가로 추방하는 과정에서 무차별 학살을 자행하고 있다.

1987년 이래로 3만5천 명을 넘는 비전투 민간인들이 살해되거나 돌연히 “사라졌으며”, 그 대부분이 정부군 내지 준군사 조직의 소행이었다. 최근 들어 군에 의한 직접적인 폭력의 비율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준군사 조직에 의한 폭력은 급증하고 있다. 이들의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량 이주가 속출하고 있으며, 파나마와 베네수엘라로 향하는 피난민의 행렬이 꼬리를 물고 있다. 반군 세력 또한 책임을 모면할 수 없다. 지난 15년 간 1천5백만 명 -1999년에만 30만 명-이상이 삶의 터전을 상실했다.

반군 활동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공식적, 비공식적 반체제 인사들 - 인권 수호가, 변호사, 판사, 농민 운동가, 노동 운동가, 교사, 학생- 또한 희생되었다. 반군들은 이들을 친정부 세력으로 의심하여 표적으로 삼았으며, 1999년에만 근 600여 명을 인질로 삼고 몸값을 받아냄으로써 반군 활동 자금을 마련하였다.

한편 도시에서는, 반군 측 민병대(밀리사)와 경찰 측 살인 부대(우익 민병대) 모두가 정치 운동가와 “사회 불량 분자”로 낙인 찍은 인사들을 타겟으로 삼았다. 자기들의 사업을 공공연히 반대했던 사람들을 제거하는 데 마약 밀매상들이 거들지 않을 리 없었다. 마약 밀매상들은 그들의 부를 기반으로 거대 지주로 발돋움하였으며, 반군 및 농민들과 직접적으로 충돌하게 되었다. 마약 거래상들이 정부군에 협력하여 준군사 살인 부대(paramilitary death squads)을 조직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1998년 취임한 안드레스 파스트라나(Andres Pastrana) 콜롬비아 대통령은 업무 개시 직전에 무장혁명군 지도자, 마누엘 마룰란다(Manuel Marulanda)를 만나 최후의 평화 협상을 벌였다. 그 이전에는 민족해방군이 콜롬비아 민간 단체 대표들과 독일에서 회합하였다. 혁명무장군에 대한 일종의 호의적 제스처로, 정부는 남중양 콜롬비아, 약 1만6천 평방 마일에 주둔하는 병력을 철수시켰다. 1999년 말미의 짧은 휴전 기간을 이어받아 정부와 무장혁명군 간의 실질적인 대화가 시작되었다. 민족해방군에 대해서도 유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999년, 파스트라나 정부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원조 조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다차원적 계획안인 “플랜 콜롬비아”를 발표하기에 이른다. 평화 협상이 진척되는 가운데도 갈등은 가일층 심화되었고, 2000년 1월 클린턴 정부는 콜롬비아에 대한 거액의 군사 지원을 약속하는 일괄 원조안을 내놓았다.

◀ 현 미 정책의 문제점들 ▶

미국의 정책은 모순적이다. 한편으론 인권 운동을 탄압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인권 유린에 연루된 이들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의 군사 원조의 명목은 마약 퇴치일지 모르나 사실상 반군을 소탕하는 데 지원되고 있으며, 그 결과 군사적인 대결과 내전의 확산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마약-반군(narcoguerrilla)” 이론은 반군 소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길 원치 않는 미국 정부가 콜롬비아 군을 지원할 때마다 어김없이 들고 나오는 구실이다.

클린턴 대통령은 2000년 연두 교서에서, 자신의 콜롬비아 일괄 원조 계획은 콜롬비아 정부가 “이번 투쟁에서 승리 하도록”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연설했다. 그러나 대체 “이번 투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국무부의 외교 정책 FY2000에 관한 국회 연설 문건을 보면 “콜롬비아의 마약 일소 투쟁은 여전히 미국의 최우선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러나 콜롬비아 군이 말하는 최우선적 투쟁은 바로 좌파 게릴라들을 소탕하는 일이다. 근래 들어 생겨난 “마약-반군”이란 단어는 이 두 가지 전투의 의미를 합친 조어로서, 정치적 편의주의를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십상이다.

콜롬비아 방위군을 지원하는 미국 원조의 관행은 현 마약 퇴치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속 유지되고 있다. 적어도 1960년대 이래로 미국은 공산주의를 발본(拔本)한다는 명목하에 자국의 군사 전문가들(특수부대, 국제 군사 교육 및 훈련)을 통한 각종 군사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반군 소탕을 위한 콜롬비아의 군사 행동에 지원을 아끼지 않

았다. 각종 무기와 군수 물자를 제공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일찍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고, 조지 부시 대통령이 마약 밀매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던 1989년 이래로 콜롬비아는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 가운데서 미국 원조의 수혜를 가장 많이 입은 국가였다.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명목 덕분에 말이다. 최근까지 콜롬비아 군당국도 그 목적이 마약상들과의 전쟁이 아니라 게릴라를 괴멸시키기 위한 것이었음을 부정하지 않았다.

1994년과 1995년에 미국 의회는 미국 원조가 추구하는 최우선적 목표가 게릴라 소탕이 아니라 마약 일소라는 사실을 증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때 해외 수출 운영 채널을 통해 콜롬비아 군사 지원이 효과적으로 차단되었다. 그리하여 미국 의회는 행정부와 의 격심한 충돌을 불사하면서까지 대규모 자금을 콜롬비아 군경의 마약 대책 지도부(DANTI)로 돌려 지원하였다. 비록 DANTI의 인권 문서에는 최근 발생한 인권 유린 사례들이 전혀 기록되지 않았지만, 인권 단체들은 증거의 부재가 인권 유린의 부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누차 경고한다.

1996년 미 의회는 인권 유린에 연루된 군조직(security force units)들 속으로 흘러들어가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일절 금지시키는 리어 법안(the Leahy Law)을 통과시켰고 행정부 역시 의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1996년에 입수된 미 정부 문서는 미국이 인권 유린에 연루되어 있는 콜롬비아 군조직을 실제로 지원했음을 밝히고 있다. (contradicting Administration officials who had assured Congress to the contrary in 1994) 리어 법안이 일부 원조 계획을 효과적으로 차단시킨 했지만, 1998년에 이르러 1994년 이래로 중단되어 왔던 콜롬비아 군사 지원을 합리화할 수 있는 구실 또한 제공하고 있다. 수혜 당사자인 콜롬비아 군조직이 인권 유린에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자료(기록)가 불충분하다는 미 행정부의 결정 때문이었다.

마약 퇴치보다는 게릴라 토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콜롬비아 군에 대한 미국 측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콜롬비아 군은 1999년에 마약 퇴치 대대(battalion)를 창설했다. 미 특수부대의 훈련을 거친 이 군조직은 의견상(명목상)으론 마약 퇴치에 복무하는 집단이다.

1980대 이래로 미 행정 관리들은, 미국이 또다시 게릴라 소탕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회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마약-반군” 개념을 유포해 왔다. 콜롬비아 군 관리들 역시 마약 밀매상이 곧 반군이라는 개념을 조장해 왔다. 그러나 그것은 얼토당토 않는 주장이다. 마약 밀매상과 게릴라는 그 정체성도 구별되거나 추구는 목표도 다르다.

마약 거래상과 게릴라는 종종 같은 지역에서 활동하거나 함께 이익을 도모하기도 한다.

많은 게릴라들이 세금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들이 관리하는 지역의 각종 사업들을 비호하듯 농민들의 코카인 재배를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군의 동맹 세력인 준군사 조직의 수괴들이야말로 자신의 유리한 입지를 이용하여 마약 밀매를 부추기고 있는 장본인들이며, 워싱턴 포스트지마저 샘퍼(Samper) 전 대통령이 마약 밀매상들로부터 정치 자금을 제공받았다는 혐의를 제기하였다. 게다가 2000년 1월에는, 보고타에 거주하는 한 미군 사령관의 아내가 헤로인 밀매 혐의를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돈벌이가 되는 일이라면 마약 밀매상들은 상대를 불문하고 결탁하고 보는 것이 오늘의 세태다.

미국 관리들은 자신들의 단계적 확대 정책(policy of escalation)이 “풀랜 콜롬비아”를 지원하고 마약과의 전쟁을 위시한 평화 과정 및 경제 발전 모두를 포괄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는 반(反)마약 대책은, 화학 물질로 인한 농지 및 삼림 지역의 낙엽화 현상과 농지와 가축, 사람들에 대한 무차별적 살포의 결과를 초래했다. ▣

대한민국 징병제의 또 하나의 폭력 군사제도와 징병제에 짓밟힌 양심

홍창욱 (평화인권연대 활동가, pporco@hanmail.net)

‘양심적’ 병역거부?

양심적 거부자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이에 대한 반감이 앞섰던 것이 사실이다. 대한민국의 성인이 된 남성은 누구나 군대를 가야하는 상황에서 이를 거부하는 이유가 양심이라니? 대체 이 양심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양심을 이유로 집총을 거부한다면, 의무를 받아들이고 군대를 간 이들은 양심이 없는 이들인가? 혹은 병역 거부자들 전체에서 ‘이들’에게 유독 ‘양심’이라는 단서를 붙이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되뇌이게 되었다.

이후 이들을 다룬 읽을 거리를 접하면서 ‘양심적 거부자’라는 용어가 세계적으로 정착이 되어있으며 이들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안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이는 일반적으로 특정한 종교적 신념이나 교리를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여호와의 증인과 제 7일 안식교등의 종교단체들이 이에 참여했으나, 현재는 여호와의 증인만이 병역을 거부하고 있다.

양심의 권리와 종교의 자유

양심은 개인의 정신적 판단과 인격적 존재가치를 포함하고 있고, 양심형성-결정-실현을 양심의 자유에 포함시킨다. 한국 헌법에서는 양심의 자유를 ‘자기 양심에 어긋나는 신념이나 행동에 강요당하지 않고 자기양심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권리’로 해석하고 있다. 양심의 자유는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받을 수 없으나 다만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정도에서 제한 받을 수 있다. 즉, 이것이 표출되는 상황이 특수한 법적 이익(징병제와 같은)과 상충하게 되었을 시에는 보장되지 못하는 내심의 자유이지 현실의 자유는 아님을 의미한다.

분단상황인 한국에서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다면 병역에 준하는 다른 의무가 적용될 수 있는가? 없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의무자체를 지우지 않는가? 그것도 아니다. 한국에서는 병역을 거부하게 되면 병역에 해당하는 징역을 살게된다. 신성한 의무라고 말하는 국방의 의무는 20세 이상의 남성이면 누구나 저야 하는 것이기에 이를 거부하는 것은 범죄에 준한다는 것이다. 또한, 거부자는 징역에 대한 전과를 가지고, 평생의 불이익을 감수하며 살아야 한다. 여호와의 증인의 위치타워협회는 현재 1400여명 정도의 신도들이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

공동체의 의무와 개인의 권리-(1) 사회계약

의무를 이유로 개인의 권리가 제약되어야 하는 논리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이 의무의 기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의무를 전제할 때 우리는 개인과 타인, 이들이 함께 이룬 공동체를 떠올리게 된다.

루소는 약탈적 전쟁상태에 직면한 개인이 어떻게 자신의 이익을 확장하면서 타인으로부터 보호받아가를 인간 존재 방식의 변화에서 찾고 있다. 개인은 자연상태에서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확장하기를 원하는 동시에 타인에 의해 자신의 이익이 침해받지 않기를 원한다. 이를 위해 각 개인간의 계약이 필요하고 계약을 통해 자신의 이익과 자유를 양도

한 대상이 바로 공동체이다. 공동체는 다시 양도받은 것을 개인에게 보장하는 식으로 되돌려준다.

각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양도하는 이유는 이를 통해 일정한 교환 가능성을 예측할 수 조건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각 개인은 전면적 양도의 조항이 부과하는 평등의 기능으로서, 자기자신을 위해 희망하는 것을 타인을 위해 희망할 것이다. 그러나, 그가 우선 자기자신을 위해 희망하지 않는다면, 그는 타인을 위해 어떤 것도 희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를 태면 내가 자신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병역을 희망한다면 동일하게 이는 타인을 위해서도 희망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만약 한 개인이나 집단이 이 특정한 의무가 자신의 이익과 자유를 신장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감소시킨다면 이를 거부한다면, 단지 거부한 이가 다른 이에게 병역의무를 요청할 수 없을 뿐이다.

반대로 병역의무를 했거나 할 개인은 자신이 희망한다고 해서 징총을 거부하는 이에게 자신과 동일한 의무를 희망해서는 안된다. 왜냐면 이는 거부자를 위해 희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신 거부자에게 피해를 주지않을 다른 동일한 의무를 희망할 수는 있는 것이다.

공동체의 의무와 개인의 권리-(2) 법적 조화

위의 논리를 법적으로 해석하자면 다음과 같다. 양심의 자유 보장과 병역의 의무를 놓고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이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는 1) 이익형량의 원칙, 2) 규범조화적 해석등이 있다. 이익형량의 원칙은 일정한 규제가 양심에 대하여 가하는 부담과 그 규제를 통해 얻어지는 이익과를 비교형량하여 판단하는 것이다. 이 원칙은 양심규제의 이익 내지, 필요성을 측정해야 한다.

규제의 이익이 절박하거나 압도적인 경우, 면제는 허용되지 않으나 양심에 대해 부담을 주지 않는 다른 방법 “가장 덜 제한적인 방법”에 의해 국가의 세속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면제를 부여해야 한다. 징병을 통한 국가이익은 양심상의 반대론자를 강제집행하지 않고서도 달성될 수 있다. 이는 다른 국가들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체근무제도를 예를 들 수 있다. 독일은 BGH(독일의 최고 유권해석기관)는 국민의 징총거부권을 인정하여 징총거부권을 주장하는 이에게 대체근무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기본권과 국가법률사이 갈등을 최대한 줄이며, 양자의 타협을 추구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양심적 거부자들에게 대한 규제의 이익은 징병제도 자체의 안정적 유지라고 할 수 있다. 대체근무 제도를 도입하게 됨으로써 이를 활용하거나 군대기피의 불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군대경험의 피해의식이 커지고 있는 상황, 징병제도내의 불평등이 사회적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대체봉사제의 도입은 군대의 위상과 운영전반에 파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전망이다. 그러나, 병력인원확충이나 군대기피를 위한 활용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한국의 종교적 징집 거부자는 년 150여명이어서 병력인원확충에 문제는 없으며, 소방관·환자관리등·재해복구등의 고된 업무를 담당해야 하기에 군대기피에 대한 우려도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2000년도부터 대체근무를 시행한 대만에서는 국방부의 예상과는 달리 지원자가 미달되었다고 한다.

진짜 vs 가짜

징병제에 대한 논의는 개인 인권에 대한 직접적 억압상황인 '종교적 양심 거부자'의 문제와 더불어서 징병제도가 재생산하고 있는 또다른 피해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한다. 일상적 통제메커니즘과 배제에 대한 접근이 그러하다. 연호와의 증인이 양심을 이유로 징병제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 기독교 단체들이 이단시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살상 거부에 대한 양심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종교적 '이단'의 논리가 '진짜/자신의 종교'를 내세우고 이에 따라 다른 신념들을 '가짜/타종교'로 평가내리고 배제하는 방식은 전형적인 소수자 배제가 아닐 수 없다. 사실 기독교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이단논리의 하나인 징총거부의 신념은 로마시대 초기 그

리스도인들에게 널리 유포된 것이었는데, 로마의 국교통합화 이후로 기독교가 대중화되면서 사라진 것이다.

사실 이러한 통제와 배제는 '종교적 양심거부권'에 대해 직접적으로 표출된 것이지만 군사제도를 둘러싼 배제와 불평등은 일상속에서 항시적으로 작동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군사제도에 대한 피해의식과 보상은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로잡는 것에서 출발해야 함에도 신체적 등급분류에 따라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군대생활을 했거나 면제된 이들 혹은 여성들은 사회적 불이익뿐만 아니라 일상속에서 배제되거나 항상 듣는 입장이 되어야 한다.

'양심'개념의 확장을 위하여

미국은 양심의 자유를 종교영역에만 국한하지 않았다. 이는 양심이 인간 '개인'의 내심이자 자기존재의 근거라고 할 때 양심이 표출된 형태를 종교형태로만 국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welsh판례(1970)는 역사와 사회학 분야의 학습 후 전쟁은 악이고 비윤리적이라는 강한 신념을 갖게 된 경우, 어떠한 형태의 전쟁에도 참여하는 것에 대해 진실되고 심오한 가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병역면제 자격을 인정한 경우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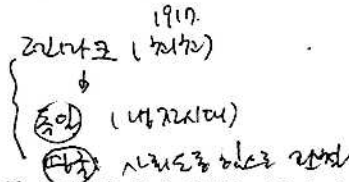
여호와의 증인이 말하고 있는 집총거부권은 종교적 교리이기 때문에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교리가 폭력과 살상에 반대하는 인간의 존엄성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인정받은 것이다. 고로 양심적 거부권은 종교인에만 국한되어서는 안되며 반전권이나 살상거부권을 주장하는 이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80년대 전방입소 거부투쟁의 경우와 같이 비록 종교적 양심의 문제는 아니었지만, 동족간의 전쟁준비에 더 이상 동의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양심또한 징집거부권에 포함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동일한 양심,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권리는 병역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이들에게도 적용해야 한다. 이들이 병역의무를 행하는 것은 자신과 타인이 함께 모여서 이룬 공동체의 보호를 위한 것이지 그것으로부터 재생산되는 사회적 폭력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50년이 넘는 세월은 결코 현실의 적과 이에 대비키 위한 물질적 군대만을 재생산한 것은 아니다. 정작 군대와 징병제의 효과는 가상의 적을 상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나 표현을 제약하는 집단적 규율상황의 연장이며 이는 바로 우리의 일상이다. 규율상황의 재생산은 결국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선배가 후배를, 남자가 여자를, 이성애자가 동성애자를, 정상인이 비정상인을, 진짜가 가짜를 배제하고 억압하는-에 이바지하며 이는 개인의 양심을 집단과 조직의 논리로 대체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그런 점에서 집단적 규율상황에 동참하는 이들은 조직논리의 가해당사자이며 보상자인 동시에 바로 자신의 양심에 대한 피해자라 할 수 있다. ▣

인권으로서의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덧붙이는 얘기들

이대훈 (영국브래드포드대학 평화학, d.lee1@bradford.ac.uk)



“내가 (평화주의자들로부터) 자주 듣던 말 중에 하나는 ‘당신 아이들이 나중에 아빠는 전쟁때 뭐했어 라고 물으면 당신은 뭐라고 답하겠는가?’ 라는 질문이었다. 나는 곧 가족을 꾸릴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 질문에 고심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나처럼 병역거부에 우호적이었던 사람들도 대부분 그랬다. 어떻게 이런 떡구름을 머리에 이고 앞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사회생활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 가족에 나를 사회의 이단자로 보면 어떻게 하나? 그러던 중 어느 날 대학 다니던 우리 아들놈이 씩 웃으며 집에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우리 친구들, 아버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였던 걸 알고는 너무 좋아하던데요. 대단한 영웅 보듯이 말이에요’라고 하는 것이었다. 참 엄청난 충격이었다. 물론 나는 내가 영웅이라고는 비슷하게 생각해 본적도 없었다. 아마 시대가 변한 것이겠다. 이제 대학 게시판에는 ‘당신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하겠는가?’ ‘아빠, 전쟁때 뭐했죠?’라는 글귀가 적히기 시작했다...” (토니 랜들스)

“우리는 정말 광야의 외로운 외침 같았다. 정말 그 당시 우리는 그렇게 느꼈다 - 거대한 흐름에 맞서는 소수 집단. 그 당시 분위기는 대단한 압박이었다. (양심적인 병역거부의 대가로) 우리는 동료들과 서로 10여년간 만날 수 없었지만 우리는 서로에 대해 너무 가깝게 느끼고 있었다. 무언가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 작용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느끼게 해 주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게 아마 그런 결단을 내린 사람들의 특성과 그 시대, 그리고 그 환경의 어려움이 합쳐져서 그런 의식을 만들어낸 거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정말 우리는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고 있었다...” (오드리 굿프렌드)

“얼마전 나는 공군에서 막 제대한 조카와 추수감사절 식사를 함께 했다. 우리는 모두 기독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나에게 물었다. ‘왜 평화주의자가 특별히 더 부각되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모두 기독교인 아닌가? 그리고 모두 각자 자기 갈 길이 있는 것이다.’ 나는 그에게 무언가 중요한 얘기를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렇게 답했다. ‘자네 이런 걸 상상해 볼 수 있겠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F-104 전폭기 조종석에 앉아서 폭격에 몸을 드러낸 도시로 향하는 모습을 말인데. 만일 우리가 그런 상상을 하고도 기독교인이라 믿는다면 나는 기독교인임을 포기하겠네.’ 조카는 나를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적이 없었어요.’ (알 존스)

(이상은 모두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양심적인 병역거부자의 증언, 출처: 뉴욕 반전연맹 위음, 물결을 거슬러: 2차 세계대전 당시 평화주의자들의 저항 수기 모음 Against the Tide: Pacifist Resistance in the Second World War - An Oral History)

“19세기의 (유럽) 역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징집제가 전쟁을 예방하지 못했다는 것을 안다. 나폴레옹이 시작한 이래로 프랑스와 독일은 150년 동안 징집제를 시행했는데 둘 다 전쟁에서 자유롭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패망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했다. 거기에 한가지 이유는 평화적 시기에 청년층 한 세대 전체를 전쟁을 위해 훈련시킨 데 있다. 그렇게 해서 한 세대 청년층들이 전쟁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생각

하도록 만들고 또 정치인들도 힘의 정치로만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고무시켰던 것이다..." (케슬린 론스 데일, 화학자, 1945년 영국 왕립학회 회원, "Conscription in the H-Bomb Age"에서)

죽임: 사형, 폭력, 무기 사용에 양심적 병역거부자

양심적 병역거부자

1. 상식적 출발: 사람의 양심에 따른 결정은 인권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신앙은 현성(현성)한 신앙"은 폭력에
의지적 의지 제공!

우리 사회에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다는 것은 소수 특별한 신앙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면 공공 토론의 장에서 말조차 꺼내기 힘든 주제다. 그러나 인권의 관점에서 보면 양심적인 병역거부권은 인권을 담당하는 모든 사람들과 기관들이 전면 인정해야 하는 기본적 인권이다.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라는 기본권에 속하는 것이며 이 기본권은 세계인권선언 18조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8조에 명시되어 있는 것¹²⁾으로 그 타당성을 의심받지 않는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에서 양심적인 병역거부권을 논의하기 힘든 것은 인권이 설정하고자 하는 영역, 즉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받지 않는 개인의 불가침적 자유 영역이 여전히 국가권력과 사회문화적 폭력 아래 불안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대부분의 종교가 살상의 금지를 기본 교리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수 신앙인만이 지금까지 행동으로서 '집중 거부'를 선택했다는 사실은 종교의 자유라는 영역 역시 국가권력 또는 국가주의 그리고 사회문화적 전통¹³⁾ 아래 불안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권으로 확립하고자 하는 노력은 이 불안한 영역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과정의 하나일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는 무기의 사용과 훈련을 거부하는 집중 거부자부터 군사적 훈련과 복무 일체를 거부하는 병역거부자까지 존재한다. 또 어떤 경우에는 국가에 의한 강제징집 자체를 반대하기도 한다. 일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성전은 참여해야 한다는 전쟁에 대한 이중적 태도를 갖고 있기도 하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16세기 유럽에서 기독교 메노교파가 시작해서 17세기 영국 우에회 교파, 18세기 독일의 형제교회 교파와 러시아 두코보르 교파로 확산되면서 등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모두 상당기간 동안 심한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 흐름을 지속, 확산시켜왔다. 1, 2차 세계대전 때에 웨이커 교파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징집거부 참전거부를 하면서 병역거부운동은 병역거부자의 인권존중과 대체복무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사회에 부각시켰다.

주로 종교적 배경의 이러한 흐름은 핵전쟁을 전제로 한 냉전체제에 들어오면서 핵무기에 대한 자각과 베트남전과 같은 강대국의 횡포에 대한 자각과 결부되어, 종교와 무관한 '세속적' 병역거부의 흐름으로 확대된다. 그리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는 무력과 전쟁 일반과 관련된 절대적 거부와 핵무기나 특정 전쟁과 관련된 선택적 거부로 나뉘기도 한다. 아울러 세속적으로 확대된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은 필연적으로 국제인권기구의 논의에 영향을 미쳐 냉전 종식 이후 구체적인 결의안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

국제앰네스티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징집대상자로서 양심상의 이유나 종교적 인종적 도덕적 인도주의적 정치적 또는 유사한 동기로부터 나오는 깊은 신념에 따라 군복무 혹은 다른 직간접적인 전쟁 및 무력행위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 (국제앰네스티¹⁴⁾, 1991년). 이는 무기를 들기를 거부하는 집중 거부와는 질적으

12) 유럽의 경우 유럽인권협약 9조.

13) 여기서 사회문화적 전통 내지 폭력은 구조적으로 강화되는 남성성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고 보이는데 본 토론의 주제가 아니므로 상세한 논의는 하지 못한다.

14) 국제앰네스티는 또한 위 정의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구금 또는 투옥되었을 경우 그 사람을 양심수로 간주한다. 국제앰네스티가 구금 또는 투옥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양심수로 간주하는 데에는 구금 및 투옥의 이유가 아래 기준에 해당되어야 한다. (1991년 자료 기준) (1)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와 그런 사람의 신청을 받아들이는 법적 규정이 없는 경우 (2) 병역 거부 신청자가 신청권을 거부당했을 경우 (3)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부에게만 허용되고 위 국제앰네스티의 정의대로 모두에게 허용되지 않았을 경우 (4) 징집이 된 이후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고자 했을 때 거부되는 경우 (5) 병역기간 중 새롭게 판단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기로 하여 근무지를 무단 이탈했을 경우 (6) 순전히 민간통제하여 순전히 민간적 성격의

로 다른 규정으로서 살상을 전제로 하는 무력의 사용과 전쟁, 그리고 군대의 사회적 위상에 대한 개인의 양심과 윤리에 따른 판단과 연관을 갖고있다.

2. 유엔에서의 인권 규정

가.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국제법적 근거

- 세계인권선언 및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8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린다.

- 1950년 확정된 국제법의 뉴렌베르그 원리 중 제4원리 (우리의 책임 / 우리의 죄) (“자국 정부 또는 상관의 명령에 따른 행동이라도 행위자가 도덕적 선택권을 가졌을 경우 국제법상 제기되는 의무를 방지할 경우 그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와 제6원리 (“아래 범 죄는 국제법상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이다: a-1. 평화를 파괴하는 범죄: 국제 조약, 협약, 보장에 위반한 전쟁 또는 침략 전쟁의 계획, 준비, 개시 및 전개 행위...)

- 그 외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우와 관련하여, 국제인권법상의 불차별조항, 고문금지 조항, 공정한 재판 및 처벌 조항, 임의구금 금지조항, 난민신청자 보호 조항 등이 적용될 수 있다.

나. 국제인권기구에서의 심의 및 결의

- 1984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결의안 27호로 유엔 인권위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검토하도록 위임 결정.

- 유엔 인권위 결의안 1987년 46호: 양심적 병역거부는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의 정당한 행사”로 결의.

- 유엔 인권위는 1989년 결의안 59호에서 위 사항을 재확인하면서 각국이 필요할 경우 기존의 법령을 수정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하도록 촉구함. 아울러 “강제 징집제가 실시되고 있는 나라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하는 제도가 미비한 경우 다른 나라의 선례를 참고로 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의 취지에 맞는 다양한 대체 복무를 제공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투옥하는 일을 자제할 것”을 권고함. 동 결의안은 또한 “대체 복무는 원칙상 비전투적 성격의 민간 업무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 유럽의 경우 유럽공동체의 유럽위원회 장관회의 결의안으로 1987년 대체복무제의 실시를 지지하고 1990년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에서 유엔 인권위 결의안에 근거하여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함.

- 1993년 시민적 정치적 인권을 다루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관련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별칭 자유권 규약 또는 인권 B규약) 제18조 사상과 양심의 자유 조항과 관련 일반 의견15) 22호를 채택.

일반 의견 22호의 주요 내용:

대체 복무를 선택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을 경우 (7) 대체근무 기간이 병역거부에 대한 징계적 성격을 띤다고 판단될 경우.

15) 일반의견(General Comment)은 이사회가 정기적으로 심의하는 국가보고서 이외에 필요에 따라 규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일반 원칙을 발표하는 제도이다. 규약의 각 조항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국제적인 기준의 하나이다.

본 규약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본 이사회는 이 권리가 치명적인 무력 (lethal force)을 사용할 의무가 양심의 자유와 종교적 신념 및 기타 신념을 구현할 권리와 심각하게 충돌한다는 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본 규약 18조에서 파생되는 권리로 간주한다. 이 권리가 법과 관행으로 보장된 이후에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특정 신념의 성격에 따라 차별받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군복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받을 수 없다. 본 이사회는 조약 가입국들이 각국에서 본 규약 18조에 의거해서 병역을 면제받을 경우 어떤 조건이 부과되는지, 그리고 대체 복무의 기간과 성격에 대해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 1995년 3월 8일 유엔인권위에서 결의안 83호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사상 양심 종교적 자유에 관한 인권의 정당한 행사로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인권임을 재확인.

- 1998년 4월 22일 유엔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관련 결의안 77호 채택. 지금까지 가장 중요하고 포괄적인 결의안. 유엔 회원국은 이를 사회에 알리고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 : 추진가능하다!

- * 1995년 유엔인권위 결의안 등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정당한 인권으로 인정된 사실을 상기해야 하며,
- *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는 양심에 기초한 이성과 원리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며,
- * 병역 복무중에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며,
- * 세계인권선언 14조에 따라 모든 사람이 박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하며,
- *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세계인권선언 18조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8조에 따른 모든 사람에게 부여되어야 할 정당한 권리라는 점에 관심을 촉구하며,
- *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보장하는 제도가 없는 국가들이 병역거부자의 신념에 대한 차별을 두지 않고 독립적이고 편견없이 양심적 병역거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기관을 설립할 것을 촉구하며,
- * 각국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의 취지에 합당한 대체 복무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며,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자 복무.
- * 각국은 병역거부로 인해 거부자가 투옥이나 반복된 징계를 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 * 각국은 병역거부로 인한 박해를 피해 자기 나라를 떠난 사람들에게 난민으로서의 보호를 취하도록 권장하며,
- * 병역에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양심적 병역거부 신청절차에 관한 정보가 쉽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며,
- * 유엔 사무총장에게 본 결의안이 각국 정부, 유엔 전문 기관, 관련 정부간 기구 및 비정부조직에게 전달되도록 조치하기를 요청하며,
- * 차기회의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 의제를 계속 심의할 것을 결정한다. (1998년 4월 22일)

<위 결의안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보장되어야 할 주요 권리>

- * 독립적이고 공정한 기관에서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
- * 난민 보호를 신청할 권리
- * 비보복적 성격의 대체 복무를 선택할 권리
- * 복무중 양심적 병역거부를 할수 있는 권리

- 2000년 4월 20일 유엔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관련된 짧은 결의안 34호에서 다음 사항을 결정함.

* 회원국들이 유엔 인권위 결의안 1998년 77호를 기준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관련된 현행 법령과 관행을 검토할 것을 촉구하며,

*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에서 각국 정부와 관련 기관 (정부간 및 비정부) 으로부터 정보를 취합하여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이행 및 침해 상황에 대한 국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한국: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보장하는 법령이 없다고만 간략히 보고됨.)

-->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법령과 관행을 검토했는지의 여부, 인권고등판무관실에 제출한 또는 미제출한 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

- 유엔인권이사회(시민권규약에 기초한 전문가기구)에서 나라별 인권 권고안 또는 심의사항에 여러 나라의 양심적 병역거부권 침해사실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다. 유엔 인권절차를 이용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

한국은 내지 / 국제적 협력 수단

- 유엔 인권절차는 회원국 정부에 강제력을 갖지 않으므로, 정부에 대한 압력과 홍보의 효과를 기대하게 된다. 보통 인권기관의 특별보고관 또는 실무그룹의 보고서, 인권기구에서 회원국 정부에 보내는 통보, 인권기구에서 민간단체가 하는 보고서 제출과 발언, 인권이사회의 자유권 상황 심의결과의 발표, 정부의 유엔 결의사항 및 조약상의 의무 이행 감시 등을 통해 정부에 대한 압력과 사회적 홍보효과가 생긴다.

- 이런 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인권기구는 유엔인권이사회 (자유권규약기구)와 유엔인권위원회 (가장 포괄적이고 정치적인 인권기구)이다.

라. 유엔 인권절차의 활용 방법

유엔 인권절차를 활용하는 방법은 현재 평화인권연대에서 번역 발간 예정으로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유엔 인권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이라는 실무적 지침자료에 잘 설명되어 있으므로, 본 자료에는 간략히 언급한다.

(1) 유엔 인권위 관련

- 국제인권단체의 구두 및 서면 발언에 내용 포함.
- 상황 정보 제공 (고문에 관한 특별 보고관, 임의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 종교적 특별 보고관, 탈사법적 처벌에 관한 특별 보고관) 이는 인권이 라는 틀관용에 관한
- 한국의 지속적인 인권 거부, 법령 미정비, 가혹한 처벌, 구타를 포함한 고문 실태가 지적되도록 활동

(2) 인권이사회

- 한국 정부의 정기 국가보고서에 대응 → 인권이사회에서 수행.
- 인권단체의 반박 보고서에 내용 포함
- 이사회의 권고에 양심적 병역거부권 보장이 포함되도록 목표

(3) 인권이사회 선택의정서에 따른 개인별 제소 (개인통보제도)

- 국내의 법적 구제절차를 모두 시도한 이후 제소 (제소 조건 참조)

3. 구미의 경험

서유럽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숫자는 냉전말기인 1980년대 말에 가면서 급증하였다. 냉전이 정착되고 핵무기 경쟁이 본격화되던 1960년대 초반과 비교할 때 1980년대말 서유럽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수는 평균 6배로 증가했다. 보다 공업화된 북부 유럽의 경우 1990년대 초가 되면 징집가능한 남성의 4분의 1이 양심에 근거해 병역을 거부할 정도였다. 1960년대 중반 연간 4천명 수준이었던 독일의 경우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수는 1991년 연간 15만명에 달해 거의 그해 입영자의 수에 육박했다. 냉전 종식 이후 동유럽 구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수가 급증하였다. 이에 따라 1990년 동서유럽을 포괄하는 유럽안보협력기구에서는 대체 복무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한다.

일찍부터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했던 미국의 경우 베트남전 말기가 되면서 징집자의 수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수가 더 많게 되었다. 그리고 징집과 병역반대 운동의 광범위한 확산은 1973년 미국이 베트남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한 이유중의 하나였다. 1980년대에 들어서도 자원입대자중 군복무중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하고 공식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로서 제대한 사람이 연평균 150명에 달했다. 1990-1991년 부시 정부가 벌인 걸프전 당시에도 1500명에서 2000명 가량의 현역 군인과 파병된 예비병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지위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이중에서 4분의 3정도가 해외파병 거부를 이유로 군사재판에 회부되었다. 1940년대에 미국의 흑인계 이슬람 교인들은 인종차별적 무력분쟁에 참여하지 않는 운동을 전개했는데, 이와 같은 이유로 한국전에 참여하기를 거부한 흑인계 이슬람 교인들이 병역을 거부하고 투옥된 기록이 있다.

유럽과 미국에서의 양심적 병역거부의 역사적 흐름에 공통점을 뽑는다면 아래와 같은 도표가 가능하다. (출처: The New Conscientious Objection)

발전단계	국가의 판단 기준	국가 정책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기대 목표
태동단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인정과 지위에 일관성이 없고 <u>극심한 차별과 예외적 인정</u> 사이에서 혼란스런 상태		
초기	"평화 교회"의 평생 회원지위 여부	비전투부문 군복무	모든 <u>종파</u> 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모든 군복무 면제
중기	위 기준 및 종교적 이유의 병역 거부	군이 관리하는 대안적 민간 업무	<u>모든</u>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군복무 면제
후기	<u>위 기준 및 세속적 이유의 병역 거부</u>	민간 관리 민간 업무	<u>선택적 병역거부 추진</u>

이러한 흐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다른 인권과 마찬가지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념과 사회적 의미를 위해 개인의 삶을 희생해가며 국가와 사회의 고정관념을 바꿔낸 결과 쟁취되었다는 것이다. 1차 세계대전 초기까지 유럽의 어떤 나라도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다가, 영국에서만 6천5백여명이 감옥에 가고 미국에서도 450여명이 투옥되는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인정되기 시작하였다.

또 우리는 1차 세계대전 당시 어려운 사회적 조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운동이 전쟁 광풍과 함께 불어닥친 민족주의 열풍과 그에 바탕을 둔 국가 동원주의에 대한 비판과 저항을 담고 있었다는 점도 기억할 수 있겠다. 이들은 전쟁을 명분으로 한 민족주의와 국가주의가 자기가 속한 사회를 어떻게 타락시키는가를 보면서 이에 대한 절망과 도전의 정신에서 병역을 거부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민족주의를 넘고자 했던 사회주의적 국제주의 맥락의 "일관된 반군주

의자" 운동도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게끔 하는데 큰 공헌을 했다. 이 과정에서 사회주의 신념을 가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매우 차별적인 처벌을 받았는데 최근 유엔 인권기구의 문서에서 "종교적 및 기타 신념에 근거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차별할 수 없다... 그 처벌 또한 차별되어서는 안된다"는 규정은 바로 이러한 역사적 경험에 바탕을 둔 것이다. 나라로는 1922년 노르웨이가 처음으로 종교적 및 기타 양심의 진지한 근거에 바탕한 병역거부를 인정했다.

러시아에서는 짜르 시대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심한 박해를 받다가 1917년 10월 혁명 직전 케렌스키 정부가 모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석방하였고, 이어 대체 복무제를 도입하려다가 볼셰비키 혁명으로 중단되었다. 이후 소련은 1918-1921년 사이 대체 복무제를 실험하다가 이후 스탈린주의로 돌입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허용 범위는 매우 협소해졌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과 미국은 다른 강대국과는 달리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하였다. 비전투직 복무를 희망하는 사람은 군대에 입대해서 그러한 복무를 하도록 허용되었으며, 군복무 일체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평화 교회 등 민간기관이 감독하는 농업, 삼림업, 보건업 등 분야에서 순수 민간업무에 종사하도록 되었다. 이 당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판별에는 그 이전 평화 교회 소속 여부에서 종교적 신념의 진실성이 기준이 되었다. 그러나 이 당시에도 전쟁을 수행하는 국가와는 어떤 협력도 하지 않겠다는 절대적 병역거부자들이 있어서 이들은 모두 투옥되었다. 그 숫자는 영국에서 여성 214명을 포함해서 약 3500여명, 미국에서는 주로 여호와의 증인 교인들이었는데 약 6천여명에 달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과 미국에서 1963년(영국)과 1973년(미국) 징집제가 폐지될 때까지 이 제도는 적용 범위가 더욱 확대되었다. 미국의 경우 1965년 대법원 판례가 있기 전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의 기준은 "절대자"에 대한 믿음이었다가, 1965년 대법원 판례에서 이 기준은; "당사자의 삶에서 신에 대한 믿음에 상응하는 위치를 갖는 진지하고 의미 있는 신념"으로 확대되었으며, 1970년 다른 판례에서 "윤리적 도덕적 신념" 역시 종교적 신념 만큼 정당한 기준으로 확대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무신론자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특정 전쟁에 대한 선택적 거부는 허용되지 않는다.

⑧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관한 가장 인상적인 발전은 독일에서 찾을 수 있다. 나찌즘과 2차 세계대전을 겪은 독일인들은 그 이후 정치-군대에 관한 문화를 상당한 정도로 수정하는데 양심적 병역거부권도 그에 따라 급속도의 진전을 이루었다. 나찌즘에 대한 예방 의식과 뉴렌베르크 전범 재판의 정신에 따라 군복무에 대한 개인의 양심에 따른 거부를 중요시하게 된 독일 사회는 1949년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연방 헌법상의 권리로 보장하였다. 서독이 나토에 가입하고 징집제가 부활한 1959년 이후 연방 의회는 "국가간의 어떠한 무력 분쟁이라도 이에 거부하는 사람"을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인정하고 본인의 선택에 따라 민간 대체복무 또는 군대의 비전투직에 복무할 수 있게 하였다. 또 병역거부자의 신념에 대해서 종교/세속, 군인/민간인 신부, 전쟁 일반/ 특정 전쟁 등의 구분을 일체 두지 않는다. 이후 북유럽 국가들이 이 모델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 확대하고 있으며 냉전 종식 이후 동유럽 국가들도 대체적으로 이 모델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보장하고 있다. 반면 탈냉전 시대가 시작된 1991년 기준으로 볼 때, 강제 징집제를 시행하고 있던 유럽 이외의 43개국 중 어떤 나라도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보장하는 나라가 없었다. 앞으로 국내에도 추가로 소개되겠지만 유럽의 경험을 바라볼 때 영국을 개별적인 병역거부에서 사회운동으로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사회화된 주요 사례로, 독일을 양심적 병역거부를 사회복지제도의 주요 요소로 포함시킨 모델로, 덴마크를 병역거부권의 선구자로 보는 시각도 참조할 만하다. (이상 주요 참고 자료는 The New Conscientious Objection, 찰스 C 모스코스 외 지음, 1993).

4. 길게 검토할 사항들

가. 절대적 병역거부와 선택적 병역거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적(법률적) 보호는 4가지 범주를 고려해야 한다. 거부행위를 하는 시점이 신분상 민간인이었을 때와 군인이었을 때가 구분될 것이며 거부의 대상이 군복무 전체에 대한 절대적 거부인지, 특정 형태의 복무 또는 특정한 전쟁에의 참여 또는 특정한 무기의 사용에 대한 거부인가를 포함하는 선택적 거부인지 구분될 것이다. 그래서 민간인 절대적 병역거부자, 군인 절대적 병역거부자, 민간인 선택적 병역거부자, 군인 선택적 병역거부자의 범주가 있을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 가치체계에서 민간인이 양심과 신념에 따라 살상행위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것은 법률로 보호받을 근거가 충분히 있고 사회적 합의도 노력 여하에 따라 가능할 것이다. 물론 이 경우만 해도 “집중 거부”와 같은 한국 사회의 편협한 용어보다는 훨씬 넓은 범위의 행위를 보호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집중 거부”라는 말은 상징적 의미를 제외하면 본질을 왜곡하는 면이 크다. 현대 군조직에서 총만 들지 않으면 살상이 피해지겠는가). 그러나 시민 개인의 판단에 따라 언제 어떻게 살상행위에 불참하겠다는 다양한 선택적 병역거부권을 권리로 보장하는 것은 훨씬 어려운 문제일 것이다.

이 두 가지 상황의 문제는 병역 거부자가 군인 신분일 경우에 더욱 복잡해진다. 왜곡된 상식으로 보면 일단 군인인 이상 군조직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군조직에도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가 사병에게 있으며, 이 권리는 사병의 도덕 윤리적 판단에 따라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정신을 담은 것이다. 우리에게도 이제 알려지기 시작한 전쟁중 민간인 학살의 경우 사병은 비록 상관의 명령일지라도 이를 거부할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특히 핵무기와 열화우라늄탄, 대인지뢰, 생화학무기, 집속폭탄 등 상식적으로도 그리고 국제법상으로도 반인도주의적 무기로 규정된 무기를 사용하는데, 또는 사용하는 것을 보조하는데 사병이 그 행위를 선택적으로 거부할 권리의 문제가 있다. 이는 최소한의 이성을 가진 사병이라면 신분을 떠나 당장 눈앞에 닥친 당면의 윤리적 종교적 문제이자 양심 인격상의 절박한 문제이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기까지는 훨씬 장기간의 복잡한 논쟁을 거쳐야 할 것이다.

아마도 본질적인 긴장은 절대적 거부와 선택적 거부 사이에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양심적 병역거부의 ‘양심’의 근거는 ‘살상’에 대한 양심의 판단을 의미하는 것이고 군조직의 ‘살상’ 행위는 군조직 내에서만 준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이 말은 군조직의 ‘살상’ 행위에 대해 사회가 옳다 그르다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합의와 별도로 다른 판단을 하는 소수자들의 인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즉 민간인 군인 신분상의 차이를 이유로 권리 보호에 차이를 둘 경우, 앞으로 예상되는 예비군의 군사훈련 거부권, 노동조합의 불법무기 생산 거부권 등과 연관시켜 볼 때 본질적인 구분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상컨대 소수 민간인의 절대적 병역거부권에서 다양한 신분/직업에서의 선택적 거부권 보장의 방향으로 서서히 합의가 만들어져야 하는 것처럼 보인다.

방위사태 남부거부

작문: 영국이중대 핵무기 증대사태 → 무지각전

나. 안보 패러다임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보장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정치권의 후진성과 사람들의 왜곡된 국가안보관일 것이다. 한국의 국가안보관은 비합리적인 몇가지 신화에 기초해 있는데, 이 허구적 국가안보관을 대체할 합리적인 안보 가치체계가 제시되어 경쟁관계에 돌입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관한 논의나 보장은 보다 차분한 분위기에서 전개될 듯하다.

한국의 허구적 국가안보관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신화 또는 냉전적 광신에 기초해 있다.

- 국가안보논의는 군사, 안보(자칭) 전문가들의 소관이다. (여기서 전문가는 군을 아는 남성들중의 일부이며, 준전문가들은 군경험을 한 남성 일반이다.)

- 왜냐하면 국가안보 논의는 특별한 (민감한, 예외적인) 논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 북한의 위협을 강조할수록 우리의 안보에 이롭다 (안보태세의 확립!)
- 북한은 언제 어떤 조건에서나 남침의 의지를 갖고 있다. (적화야욕설, 최후도발설)
- 북한은 언제 어떤 조건에서나 군사력을 강화해 왔다. (군사력증강 향상설)
- 국가안보 (또는 무력분쟁) 에서 군사력은 핵심적 중요성을 갖는다.
- 북한의 남침군사력과 한국의 방어군사력은 낱알세기로 비교한다. (탱크, 비행기 숫자 높음)
- 안보의 위협은 외부에서 온다.
- 한국(+미국)의 군사력이 우월하면 안보에 유리하다. (= 북한의 군사력 증강은 우리의 '방어력'과 무관하다.)
- 약소국의 안보에는 강력한 동맹이 필요하다 (또는 더 유리하다).
- 미국은 한국의 국가안보에 혈맹적 지원국가이다.
- 국방 의무는 신성하다.
- 국방은 군조직을 통해서 (또 '정상적인/강인한' 육체를 가진 남성들로) 수행된다.

물론 이런 신화들은 최근 사회운동과 극소수 연구자들에 의해서 조금씩 도전받고 있지만, 이러한 유치한 안보관과 전혀 다른 질의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이 제시될 경우 더 빠르게 붕괴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체제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5. 양심적인 병역거부권 확립을 위한 사회운동이 할 수 있는 일

* 큰 방향: 병역에 따른 인간 살상의 문제를 "신앙문제에서 인권으로" 보편화.

가. 인권단체의 준비

- 가능한 모든 논쟁구도에 대한 대비
- 피해자 조사, 연계
- 대응방법의 훈련/ 전담자 준비
- 시민, 사회운동 내부의 인식의 증진을 위한 노력 (특히, 군사주의와 남성성)
- 여론화 필진의 준비

(1) 참조 1: 병역거부와 연관된 군사부문에 대한 다양한 거부의 사례

- 무기, 탄약, 무기 보조장비의 제조 생산 판매에 대한 참여 거부
- 군사 목적의 통신, 운송, 건축에 대한 참여 거부
- 무기 장난감의 생산 판매에 대한 참여 거부
- 군사 목적의 연구활동에 대한 거부
- 유치원 등 교육시설에서 군사분야와 관련된 자료 및 홍보물 부착 거부
- 방위세 납부 거부 (예: 영, 미) 등

(2) 참조 2: 군사활동에 사회적 차원에 대한 홍보 사례

- 무기별 가격 및 파괴력 (예: 전미과학자협회 웹사이트)
- 무기별 살상 효과 및 사례 (예: 대인지뢰, 열화우라늄탄)

- 무기별 군수산업의 로비 비용 대비 이윤율
- 무기판매 로비와 관련된 선진국 업체 명단과 개도국 관료의 부정비리 관계
- 현재 시장에서 합법적으로 판매중인 상업용 무기의 실태 조사 (예: Non-lethal weapons 비치명적 무기?)
- 현재 선진국에서 개발중인 것으로 알려진 신무기의 실태 (예: 화학적 수소폭탄)
- 외국과 한국 아동 교육기관에서의 무기 홍보의 차이 (유치원 및 아동 도서에 게시된 전투기, 군함, 탱크, 전쟁 그림 등의 빈도수 비교)
- 주요 교육자료 및 공공자료에 나타난 전쟁관, 군인관, 군대관, 힘의 논리의 페미니즘적 해부와 드러내기
- 나라별 군사비 지출과 사회복지 수준의 비교
- 군사훈련의 민간손실, 사회적 손실 계산 폭 (예: 농지 파괴, 농산물 파괴, 해안 해저 환경 오염 등)

나. 사회홍보

- 권위있는 홍보/설명 책자의 발간 [살인을 거부할 작은 자유 1, 2, 3]

(징집제도의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배경, 징집제도가 끼치는 사회 문화적 영향, 인권으로서 병역거부권, 인도주의 철학/신념으로서 병역거부권, 병역거부운동의 역사, 병역거부 선구자들의 주요 수기 발췌, 주요 국가 병역거부권 보장 제도, 병역거부권을 둘러싼 논쟁과 그 의미,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 양심적 병역거부권 보장 방향,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가져오는 사회적 효과(젠더 관계, 인도주의, 군의 사회적 지위, 사회복지상의 효과, 남북관계, 평화 문화...), 평화사상/실천으로서 양심적 병역거부)

- 각 종교권에 해당되는 신앙적 관점의 홍보 책자 발간 (특히 교회 및 사찰 청년모임과 주부모임에서 회람될 수 있는 안내소책자의 발간)
- 여성 모임에서 이용될 수 있는 젠더 관점의 소책자 발간: 군사주의와 남성성 강화 및 그에 대한 시민적 저항에 관한 소책자
- 시민, 사회단체의 주체들의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군사주의와 남성성에 관한 의식화 책자 발간
- 적절한 시기에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여론화를 목적으로 하는 공개 세미나/토론회 개최

다. 조사

- 여론조사: 예상컨대 최근 징집대상 세대와 그 부모들은 양심적인 병역거부권의 의미와 내용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상당한 호응이 있을 것으로 예상. 언론의 적절한 보도와 소개에 발맞춰 당사자층과 그 부모층을 중심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중요한 자료가 만들어질 듯. 여론 조사 이전에 언론을 통해 국내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깊은 인도주의 신념과 그 은기가 수기 등을 통해 사회에 전달되는 것이 중요할 수도.

- 양심적 병역거부자 재판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조사 평가

라. 피해자 구제, 입법화... ▣



**Economic and Social
Council**

Distr.
GENERAL

E/RES/1984/27
24 May 1984

Original: ENGLISH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Resolution 1984/27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1. Decides:

(a) That the report prepared by Mr. Eide and Mr. Mubanga-Chipoya on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should be printed and given the widest possible distribution;

(b) To transmit the report for comments and observations to Governments and relevant United Nations bodies and specialized agencies, other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2. Requests the Secretary-General to report to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at its forty-first session on those comments and observations and on other significant developments regarding the human rights of conscientious objectors;

3. Requests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to study the report on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including the recommendations contained therein, as well as the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containing the comments and observations, under the item entitled "The role of youth i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cluding the question of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Resolution 1984/27

24 May 1984

Meeting 20



**Economic and Social
Council**

Distr.

GENERAL

E/CN.4/RES/1995/83

8 March 1995

Original: ENGLISH

1995/83.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affirming that all Member States have an obligation to promote and protect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and to fulfil the

obligations they have undertaken under the various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humanitarian law,

Bearing in mind that it is recognized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that everyone has the right to life, liberty and security of person, as well as the right to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Recalling its resolution 1989/59 of 8 March 1989, in which it recognized the right of everyone to have conscientious objections to military service as a legitimate exercise of the right to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Recalling also its resolution 40 (XXXVII) of 12 March 1981, in which it pointed to the need for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circumstances under which military service might be objected to on grounds of conscience,

Recalling further the comprehensive report by Mr. Asbjørn Eide and Mr. Chama Mubanga-Chipoya entitled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United Nations publication, Sales No. E.85.XIV.1) submitted to the Subcommittee on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and Protection of Minorities at its thirty-sixth session,

Taking into consideration that some States provide for non-combatant service within the military framework and sometimes for alternative civilian service, even though no provision is made in their domestic legislation concerning the recognition of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Recalling its resolution 1993/84 of 10 March 1993, in which it requested the Secretary-General to report to the Commission on the matter at its fifty-first session,

Having considered the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E/CN.4/1995/99), and thanking those Governments that provided comments to the Secretary-General,

Noting General Comment No. 22 (48)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 on article 18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n which the Committee inter alia expressed the view that a right of conscientious objection can be derived from article 18 and that, when this right is recognized by law or practice, there should be no differentiation between conscientious objectors on the basis of the nature of their particular beliefs and that, likewise, there should be no discrimination against conscientious objectors because they have failed to perform military service,

Aware that persons performing military service may develop conscientious objections,

Recognizing that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derives from principles and reasons of conscience, including profound convictions, arising from religious, ethical, humanitarian or similar motives,

Recalling article 14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which recognizes the right of everyone to seek and enjoy in other countries asylum from persecution,

1. Draws attention to the right of everyone to have conscientious objections to military service as a legitimate exercise of the right to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as laid down in article 18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s well as article 18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2. Affirms that persons performing military service should not be excluded from the right to have conscientious objections to military service;

3. Appeals to States, if they have not already done so, to enact legislation and to take measures aimed at exemption from military service on the basis of a genuinely held conscientious objection to armed service;

4. Urges States in their law and practice not to differentiate between conscientious objectors on the basis of the nature of their particular beliefs nor to discriminate against recognized conscientious objectors for failure to perform military service;

5. Reminds States with a system of compulsory military service, where such provision has not already been made, of its recommendation that they introduce for conscientious objectors various forms of alternative service which are compatible with the reasons for conscientious objection and that they refrain from subjecting conscientious objectors to imprisonment;

6. Emphasizes that such forms of alternative service should be of a non-combatant or civilian character, in the public interest and not of a punitive nature;

7. Recognizes that some States accept claims of conscientious objection as valid without inquiry, and appeals to Member States that do not have such a system to establish, within the framework of their national legal system, independent and impartial decision-making bodies with the task of determining whether a conscientious objection is valid in a specific case;

8. Affirms the importance of the availability of information about 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and the means of acquiring conscientious objector status, to all relevant persons affected by military service;

9. Requests the Secretary-General to transmit the text of the present resolution to all States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and to include the right of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in the public information activities of the United Nations, including the United Nations Decade for Human Rights Education;

10. Also requests the Secretary-General to submit to the Commission at its fifty-third session an update of the information provided in the annexes to the report by Mr. Asbjørn Eide and Mr. Chama Mubanga-Chipoya, taking into account information from

Governments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any further information available to him:

11. Decides to consider this matter further at its fifty-third session under an agenda item with a new title: "The question of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62nd meeting

8 March 1995

[Adopted without a vote. See chap. XXVI.]

**UNITED
NATIONS****E****Economic and Social
Council**Distr.
GENERAL

E/CN.4/RES/1998/77

22 April 1998

Original: ENGLISH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Commission on Human Rights resolution 1998/77**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Bearing in mind that it is recognized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that everyone has the right to life, liberty and security of person, as well as the right to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and the right not to be discriminated against,

Recalling its previous resolutions on the subject, most recently resolution 1995/83 of 8 March 1995, in which it recognized the right of everyone to have conscientious objections to military service as a legitimate exercise of the right to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as well as article 18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nd General Comment No. 22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 adopted at its fortyth session in 1993,

Having considered the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E/CN.4/1997/99),

Recognizing that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derives from principles and reasons of conscience, including profound convictions, arising from religious, moral, ethical, humanitarian or similar motives,

Aware that persons performing military service may develop conscientious objections,

Recalling article 14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which recognizes the right of everyone to seek and enjoy in other countries asylum from persecution,

1. Draws attention to the right of everyone to have conscientious objections to military service as a legitimate exercise of the right to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as laid down in article 18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article 18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2. Welcomes the fact that some States accept claims of conscientious objection as valid without inquiry;

3. Calls upon States that do not have such a system to establish independent and impartial decision-making bodies with the task of determining whether a conscientious objection is genuinely held in a specific case, taking account of the requirement not to discriminate

between conscientious objectors on the basis of the nature of their particular beliefs;

4. Reminds States with a system of compulsory military service, where such provision has not already been made, of its recommendation that they provide for conscientious objectors various forms of alternative service which are compatible with the reasons for conscientious objection, of a non-combatant or civilian character, in the public interest and not of a punitive nature;

5. Emphasizes that States should take the necessary measures to refrain from subjecting conscientious objectors to imprisonment and to repeated punishment for failure to perform military service, and recalls that no one shall be liable or punished again for an offence for which he has already been finally convicted or acquitted in accordance with the law and penal procedure of each country;

6. Reiterates that States, in their law and practice, must not discriminate against conscientious objectors in relation to their terms or conditions of service, or any economic, social, cultural, civil or political rights;

7. Encourages States, subject to the circumstances of the individual case meeting the other requirements of the definition of a refugee as set out in 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to consider granting asylum to those conscientious objectors compelled to leave their country of origin because they fear persecution owing to their refusal to perform military service when there is no provision, or no adequate provision, for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8. Affirms the importance of the availability of information about 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and the means of acquiring conscientious objector status, to all persons affected by military service;

9. Requests the Secretary-General to transmit the text of the present resolutions to Governments, the specialized agencies and relevant intergovernmental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to include 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in the public information activities of the United Nations, including the United Nations Decade for Human Rights Education;

10. Also requests the Secretary-General to collect information from Governments, the specialized agencies and intergovernmental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on recent developments in this field and to submit a report, within existing resources, to the Commission at its fifty-sixth session;

11. Decides to consider this matter further at its fifty-sixth session under the agenda item entitled "The question of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58th meeting
22 April 1998

[Adopted without a vote. See chap. XXII.]

Geneva, Switzerland

**UNITED
NATIONS****E****Economic and Social
Council**Distr.
GENERALE/CN.4/RES/2000/34
20 April 2000

Original: ENGLISH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Commission on Human Rights resolution 2000/34***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Bearing in mind that it is recognized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that everyone has the right to life, liberty and security of person, as well as the right to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and the right not to be discriminated against,

Recalling its previous resolutions on the subject, most recently resolution 1998/77 of 22 April 1998, in which the Commission recognized the right of everyone to have conscientious objections to military service as a legitimate exercise of the right to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as laid down in article 18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article 18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nd General Comment No. 22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 adopted at its forty-eighth session in 1993,

Having considered the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E/CN.4/2000/55),

1. *Calls upon* States to review their current laws and practices in relation to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in the light of its resolution 1998/77;
2. *Requests*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to prepare a compilation and analysis of best practices in relation to the recognition of the right of everyone to have conscientious objections to military service, as a legitimate exercise of the right to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and the provision of alternative forms of service, based on the provisions of Commission resolution 1998/77, and to seek such information from Governments, the specialized agencies and relevant intergovernmental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to submit a report containing this information to the Commission at its fifty-eighth session under the agenda sub-item entitled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60th meeting
20 April 2000*

[Adopted without a vote.]

?Copyright 1996-2000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Geneva, Switzerland

6.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앰네스티 정책지침

1987년 국제대의원총회의 결정사항 제 5 호, 1991년 국제대의원총회의 결정사항 제 10 호는 본 지침을 개정해서 다음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첫째, 군인으로 군복무를 거부하게 된 사람들에 관한 앰네스티의 정책은 징집된 군인과 자원 입대자 모두에게 적용되며, 양자간의 구별이 없음을 명확히 할 것. 둘째, 선택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할 것.

1. 양심적 병역거부자란, 병역의무 징집대상 또는 등록대상자(실제로는 군복무가 없더라도)로서 양심상의 이유 또는 종교적, 윤리적, 도덕적, 인도적, 철학적, 정치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비롯된 확신의 이유로 군복무 또는 전쟁이나 무력분쟁에의 직 간접적인 참여를 거부한 사람이라고 이해된다.
2. 제 1조에 규정된 양심상의 근거에서 병역 또는 징집등록을 거부했다고 해서 구금 또는 투옥된 경우, 그 사람의 투옥 또는 구금이 다음에 나오는 사유에서 비롯되었다면 앰네스티는 그 사람을 양심수로 간주할 것이다.